

(재)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
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(재)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

의 안 변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9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 「구미학숙」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수도권 진학생인
지역출신 우수 인재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 여건을
조성.

나. 수익사업인 1층 상가 부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
상가 임대차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학숙 환경개선 및 입사
규모 확대에 지역출신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

(2) 소 재 지 :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

(3) 출연예정액 : 450백만원(운영비 150백만원, 리모델링 300백만원)

나. 주요 사업

(1) 구미학숙 운영 지원

- 운 영 비 : 300백만원(출연금 150백만원, 입사생수입 150백만원)
- 운영내용 : 인건비, 운영비, 제세공과금 등

(2) 구미학숙 1층 리모델링

- 사업내용 : 1층 전면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
 - 1층 공간 재배치 : 관리실 및 현관 입구 조정, 내·외부 환경개선
 - 입사생 사설 증설 : 3실, 입사규모 확대(104명→110명)
 - 편의시설 확충 : 독서실, 체력단련실 재배치 및 확대
- 예산소요액 : 300백만원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학숙 1층을 최적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입사생 편의 확대 및 효율적인 학숙운영을 도모하고,
- (2) 입사규모 확대를 통한 학숙 수혜폭을 확대하여 지역 인재육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
제7조 (기금 출연)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김 종 율
	담 당	강 호 근
	담 당 자	김 동 기 (480-6784)